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약관

시행일 2017.01.02
개정일 2018.01.02
개정일 2019.01.07
개정일 2020.05.18
개정일 2021.01.04
개정일 2021.03.22
개정일 2021.03.25
개정일 2021.05.10
개정일 2021.05.21
개정일 2021.08.31
개정일 2022.01.01
개정일 2022.05.16
개정일 2023.10.12
개정일 2024.01.15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1 조(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자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가. 1 명당 1 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
 - 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라.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마.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text{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text{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text{누적 납입금액}$

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말한다.
4.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7.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2 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8.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9.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 3 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 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 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고객이 제 6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⑧ 고객은 제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업무의 위탁)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넘는 범위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며,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3 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 개월 이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7 조(투자일임방법 등)

- ①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시한다. 이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제 1 항 전단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선택하며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 ③ 고객은 제 2 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
- ④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 ⑤ 고객이 제 4 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
- ⑥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 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 2 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델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
 - 1. 제 2 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 2.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 3.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

제 8 조(고객의 상담요청)

- ①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 9 조(고객의 운용제한)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 10 조(중도해지)

-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제 11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중도에 처분하여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 11 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고객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 12 조(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3 조(수수료)

-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고객의 다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 방법으로 지급하며 고객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고객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에서 수수료가 지급된다.
- ⑤ 제 4 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하거나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0 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⑥ 제 5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 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채우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자산의 인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⑨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4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 내역
 5.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6.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 1 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 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5 조(일임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재산처리)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제 3 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16 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7 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 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실
3.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8 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는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9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

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 등을 준수한다.

제 22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3 조(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4 조(관계법규 등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1. 랩 서비스 명 : 미래에셋증권 일임형ISA 글로벌자산배분

□ 유형명: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초고위험(국내주식포함), 고위험(국내주식포함), 중위험(국내주식포함), 저위험(국내주식포함)]

구분	세부내용
가입(계약)금액	10만원 (단, 편입상품별 최소 가입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준수)
수수료부과기준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연 0.1% (분기 0.025% 후취)
수수료 납부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첫 영업일 (분기 중 투자일임재산의 평균잔고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첫 영업일 또는 계약해지 및 종료 시 징수(백원미만 절사)
연체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편입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유형명 : [ETF 포커스 70, ETF 포커스 40]

구분	세부내용
가입(계약)금액	100만원 (단, 편입상품별 최소 가입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준수)
수수료부과기준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연 0.5% (분기 0.125% 후취)
수수료 납부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첫 영업일 (분기 중 투자일임재산의 평균잔고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첫 영업일 또는 계약해지 및 종료 시 징수(백원미만 절사)
연체수수료	없음
그 밖의 사항	편입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모델포트폴리오

□ 모델포트폴리오 명칭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 (총 11개 유형)

구분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등급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미래에셋증권 모델포트폴리오 유형 명칭		글로벌 자산배분 일임형 ISA 초고위험	글로벌 자산배분 일임형 ISA 초고위험 (국내주식제외)*	글로벌 자산배분 일임형 ISA 고위험	글로벌 자산배분 일임형 ISA 고위험 (국내주식제외)	글로벌 자산배분 일임형 ISA 중위험	글로벌 자산배분 일임형 ISA 중위험 (국내주식제외)	글로벌 자산배분 일임형 ISA 저위험	글로벌 자산배분 일임형 ISA 저위험 (국내주식제외)	글로벌 자산배분 일임형 ISA 초저위험
				글로벌자산배분 일임형 ISA ETF 포커스 70		글로벌자산배분 일임형 ISA ETF 포커스 40				
투자 자 자 유 형	성장형	매우높은위험 이하 가능								
	성장추구형	투자 및 권유 불가			높은위험 이하 가능					
	위험중립형				보통위험 이하 가능					
	안정추구형									
	안정형				매우낮은위험가능					

* 국내주식형 상품을 불포함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뜻함

□ 운용전략

- 각 모델포트폴리오는 당사 글로벌자산배분 모델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위험도가 높은 모델포트폴리오일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위험도가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인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집니다.

〈유형별 운용전략 및 특징〉

유형 구분	위험도	운용전략 및 특징
초고위험	매우높은위험	위험자산* 100% 이내에서 공격적으로 자산배분
초고위험 (국내주식제외)		위험자산 100% 이내에서 공격적으로 자산배분하나 국내주식형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음
고위험	높은위험	위험자산 80% 이내에서 적극적인 자산배분
고위험 (국내주식제외)		위험자산 80% 이내에서 적극적인 자산배분하나 국내주식형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음
ETF 포커스 70		위험자산 70% 이내에서 ETF에 집중투자하여 적극적인 자산배분
중위험	다소높은위험	위험자산 60% 이내에서 균형있는 자산배분
중위험 (국내주식제외)		위험자산 60% 이내에서 균형있는 자산배분하나 국내주식형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음
ETF 포커스 40		위험자산 40% 이내에서 ETF에 집중투자하여 보수적인 자산배분
저위험	보통위험	위험자산 40% 이내에서 보수적인 자산배분
저위험 (국내주식제외)		위험자산 40% 이내에서 보수적인 자산배분하나 국내주식형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음
초저위험	매우낮은위험	위험자산 20% 이내에서 안정적인 자산배분으로 '단기시장금리+ α ' 수익을 추구

* 위험도가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인 개별 금융상품의 합계를 뜻함

- 국내주식형 상품을 포함하는 모델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편입하여 자산이 운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주식형 상품을 포함하지 않는 모델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산에 대한 노출도가 높습니다.

□ 편입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위험도	모델 포트폴리오 명칭	투자 자산군				위험자산 ²⁾ 투자한도
		주식형 펀드 ¹⁾ / ETF	채권형 펀드/ETF	기타펀드 /ETF 또는 파생결합 증권	MMF/ RP	
매우높은 위험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초고위험	80%	18%	0%	2%	100% 이하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초고위험(국내주식제외)	80%	18%	0%	2%	
높은위험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고위험	70%	26%	0%	4%	80% 이하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고위험 (국내주식제외)	70%	26%	0%	4%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ETF 포커스 70	70%	23%	7%	0%	
다소높은 위험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중위험	40%	54%	0%	6%	60% 이하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중위험 (국내주식제외)	40%	54%	0%	6%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ETF 포커스 40	40%	45%	15%	0%	
보통위험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저위험	18%	74%	0%	8%	40% 이하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저위험 (국내주식제외)	18%	74%	0%	8%	
매우낮은 위험	미래에셋증권 일임형 ISA 글로벌자산배분 초저위험	0%	85%	0%	15%	20% 이하

1) 시장상황 및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주식혼합형 펀드 편입 가능

2) 위험도가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인 개별 금융상품의 합계를 뜻함

※ 상기 표에 나와 있는 투자비중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작성 기준일에 산출된 자산배분 안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당사의 일임형ISA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 적용되는 자산배분 안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모델포트폴리오는 당사 홈페이지나 지점 자산관리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자산군에 대한 투자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군에 복수의 금융상품을 편입함으로써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의 투자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 상기 모델포트폴리오별 자산군 편입비중은 편입 상품별 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지 2]

* 본 상품은 신규계약 체결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1. 랩 서비스 명 : 미래에셋증권 일임형ISA 적극투자형 모델포트폴리오
(A형-패시브, B형-액티브)

구분	세부내용
가입(계약)금액	10 만원
수수료부과기준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연 0.70% (월 후취)
수수료 납부일	익월 첫 영업일
연체수수료	없음
위험도	높은위험
그 밖의 사항	신규 가입 불가

2. 랩 서비스 명 : 미래에셋증권 일임형ISA 위험중립형 모델포트폴리오
(A형 - 패시브, B형 - 액티브)

구분	세부내용
가입(계약)금액	10 만원
수수료부과기준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연 0.50% (월 후취)
수수료 납부일	익월 첫 영업일
연체수수료	없음
위험도	다소높은위험
그 밖의 사항	신규 가입 불가

3. 랩 서비스 명 : 미래에셋증권 일임형ISA 안정추구형 모델포트폴리오
(A형-패시브, B형-액티브)

구분	세부내용
가입(계약)금액	10 만원
수수료부과기준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연 0.20% (월 후취)
수수료 납부일	익월 첫 영업일
연체수수료	없음
위험도	보통위험
그 밖의 사항	신규 가입 불가

4. 랩 서비스 명 : 미래에셋증권 일임형ISA 안정형 모델포트폴리오

구분	세부내용
가입(계약)금액	10 만원
수수료부과기준	예탁자산 평균잔액
수수료	연 0.10% (월 후취)
수수료 납부일	익월 첫 영업일
연체수수료	없음
위험도	매우낮은위험
그 밖의 사항	신규 가입 불가

〈별첨〉

1. 제18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반환지연기간 : 철회요청일 + 3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
- 연체이자율 : 9.9%

※ 연체이자 = 반환대상금액 × 연체이자율(9.9%) × 반환지연기간 ÷ 365 (윤년의 경우, 366일)